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4호로 2023년 8월 11일 신흥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재위촉, 위촉 해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1. ~ 8.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및 재위촉 금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구성 등)는 현행 제17조제8항을 제9항으로, 제17조 제9항을 제8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 안 제17조(구성 등)제8항에서는 현 조례 제17조제9항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제20조제1항제4호¹⁾를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변경함.

○ 검토 결과

- 현 조례 제17조제7항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제8항은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부족 시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자도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제17조제9항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자에 대해 1년 이내 재위촉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부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1)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자를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제17조 제8항과 제9항이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본 개정을 통해 순서를 바로잡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한편, 현 조례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제20조 제1항제4호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개정안의 내용처럼 현행보다 재위촉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취지에 부합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이며, 본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 ⑨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⑩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 ⑪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⑫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